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

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!

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개정으로 인해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.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

“다문화학생”의 정의를 “다문화가족의 구성원”으로 수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. 또한,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입학 예정자와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더 많은 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!